

2019회계연도 2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- 일 자 : 2019. 9. 3.(화)
- 장 소 :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2019회계연도 2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
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

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

2019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

「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4,257백만원

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집행함('19.6.28 지출)

□ 공사개요

- 공 사 명 :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2-1일대
- 규 모 : 지하3층/지상4층, 연면적 86,574 m^2
- 공사기간 : 2009.3.31.~2013.11.30
- 총사업비 : 4,212억원
(건설공사비 : 2,777억원, 감리비 : 135억원, 기타 : 1,300억원)
- 시 공 사 : 삼성물산(주) 대표 이영호

□ 소송개요

- 사건번호 : 2016나2055903(1심 : 2014가합550456)
- 원 고 : 삼성물산(주)
- 피 고 : 서울특별시
- 청구금액 : 9,784백만원
- 재 판 부 : 서울고등법원(1심 : 서울중앙지방법원)
- 사건내용 :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공사완료 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의 시공자인 원고는 원고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비 발생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
 - 1차 공사기간 연장(7개월)으로 인한 간접비 : 4,119백만원
 - 2차 공사기간 연장(12개월)으로 인한 간접비 : 5,665백만원

□ **1심 판결**(‘16.07.20)

- 시공사가 우리시로부터 차수별 준공금 수령 이전에 지급을 요청한 2차 및 제4차중 차수별 계약이 중첩되는 기간을 제외한 50일의 간접비 청구를 인정함.
 - $9,670,274,936\text{원}(\text{감정평가금액}) \times 50\text{일} / 583\text{일} = 829,354,625\text{원}$
 - ※ 이자(2차 92,358,033원, 4차 49,965,217원, 합계 142,323,250원)
- 판결금에 대해 소송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로부터 971백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급함.
 -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각 차수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항소함.

□ **2심 판결**(‘19.05.24)

- 시공사가 우리시로부터 총괄계약이든 차수별 계약이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준공금 수령 이전에 지급을 요청한 4차공사(36일) 5차공사(90일) 6차공사(122일)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를 인정함.
 - 판결금 3,284,244,318원, 이자 973,126,091원, **합계 4,257,370,409원**
 - ※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산 예정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도시기반 시설본부	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설	배상금 등 (305-01)	4,257,371,000	‘19.6.28

□ **상고 진행중**(‘19.06.13 상고장 접수)

- 총괄계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차수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으로 해석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정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 해석하였고, 6차수 계약기간 연장은 절대공기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약 92억을 증액하여, 연장기간에 간접비를 증액 하는 것은 중복하여 간접비를 지급되는 것으로 상고함.